

주식회사 민간임대허브제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이사회 의사록

1. 일시 : 2025년 11월 20일(목) 오후 2시
2. 장소 :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, 본점 4층 회의실
3. 의안 :
 - 1) 제 1호 의안: 신주발행의 건
4. 참석자 :

이사총수 3명 출석이사수 3명

법인이사의 지정을 받은 의장인 양귀호는 의장석에 등단한 후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됨을 설명하고 개회를 선언한 후, 부의안건을 상정하다.

제1호 의안: 신주 발행의 건 (기명식 보통주식)

의장은 회사가 정관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주(기명식 보통주식)를 발행하여 자본을 증액하고자 함을 설명하다. 동 자본증가의 조건과 내용을 회의에서 설명한 후에, 의장은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제의하다.

신주의 종류와 수: 기명식 보통주식 610,000주

1 주의 금 액 : 10,000원

발 행 가 액 : 1주당 100,000원

청 약 일 : 2025년 11월 25일

납 입 일 : 2025년 11월 25일

납입을 맡을 은행: 농협은행 NH금융PLUS 파크원센터

인 수 방 법 :

정관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(주택도시기금의 운용·관리자인 국토교통부장관)에게 신주(기명식 보통주식) 610,000주를 전부 배정한다. 인수청약이 있는 주식의 수가 회사 신주 발행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는 실권주 배정을 위하여 납입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청약예정자 중 미청약인

에 대해 상법 제423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출석 이사들은 제안된 신주발행 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, 만장일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.

결의사항: 의장의 제안대로 신주(기명식 보통주식)를 발행한다.

의장은 이상으로 금일의 의안이 전부 심의 종료되었음을 설명한 후 오후 2시 2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.

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들이 다음에 기명 날인하다.

2025년 11월 20일

주식회사 민간임대허브제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법 인 이 사 주택도시보증공사



감 독 이 사 전 성 현



감 독 이 사 박 미 향



배부자료: 이사회 회의자료

